# 2026년 문화누리카드 허용업종 및 품목 안내

문화누리

**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**

**체육시설 대관, 체육시설 물품보관**

※ 국내 거래 업종과 품목만 허용




## 문화누리카드 허용 품목 및 업종

### 문화

| 분류(장르) | 소분류 | 업종 및 품목 |
|---|---|---|
| 도서 | 도서 | 도서, 중고도서, 전자책, 만화콘텐츠, 신문, 잡지<br>* 복합사업자(허용, 비허용 동시 취급 가맹점)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|
| 음악 | 음악 | 음반, 음원콘텐츠, 악기(악기부속품) |
| 영상 | 영화 | 영화, 영상콘텐츠(OTT 서비스 등) |
| | TV | 케이블TV, 위성방송 |
| 공연 | 공연 | 공연(공연장, 극단, 예술단, 공연기획사, 아트홀) |
| 미술 | 전시 | 전시(미술관, 박물관, 화랑, 비엔날레), 미술품 |
| | 공예 | 공예품, 문구(화방, 문구점), 표구 |
| | 사진관 | 사진촬영, 사진인화 |
| 문화체험 | 문화체험 | 지역축제, 문화체험(공방, 문화센터, 공공서비스사이트, 도서관 프로그램 등), 온라인취미클래스, 한복대여, 드론체험 등 |
| 문화일반 | 문화일반 | 결제대행사(PG사) |

### 관광

| 분류(장르) | 소분류 | 업종 및 품목 |
|---|---|---|
| 교통수단 | 철도 | 철도(KTX, SRT, 무궁화호 등) |
| | 시외/고속버스 | 시외버스, 고속버스, 공항리무진(시외운행) |
| | 국내항공 | 항공사 |
| | 여객선 | 여객선 |
| | 렌터카 | 렌터카, 전세버스 |
| 여행사 | 여행사 | 여행사 |
| 관광지 | 관광명소 | 국립공원, 사적지, 시티투어, 케이블카, 모노레일, 기념관, 과학관, 천문대, 동굴, 영화(드라마) 촬영장, 산업관광지 |
| | 휴양림/캠핑장 | 휴양림, 캠핑장, 야영장, 캠핑용품 |
| | 동·식물원 | 동물원, 식물원, 정원 등 동물·식물 주제 관광지 |
| | 온천 | 온천(온천법 허가업소) |
| | 체험관광 | 템플스테이, 레일바이크, 짚라인, 모노레일,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|
| | 테마파크 | 놀이공원, 워터파크, 아쿠아리움, 민속촌, 실내형 테마파크(키즈카페, VR체험, 방탈출, 직업체험, 실내 엑티비티) |
| 숙박 | 숙박 | 호텔, 리조트, 콘도, 모텔, 게스트하우스, 민박, 연수원, 수련원 |

### 체육

| 분류(장르) | 소분류 | 업종 및 품목 |
|---|---|---|
| 스포츠관람 | 스포츠관람 | 프로스포츠 입장권, e스포츠 경기 입장권,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, 구단 공식 응원용품 |
| 체육용품 | 체육용품 | 체육사 및 체육용품, 자전거, 공유자전거·전동킥보드, 낚시용품 |
| 체육시설 | 체육시설 | 종목 수영, 헬스, 볼링, 요가, 에어로빅, 필라테스, 복싱, 탁구, 당구, 사격, 롤러스케이트, 승마, 스케이트, 스키, 태권도, 합기도, 스포츠댄스, 방송댄스, 레저스포츠, 요트, 패러글라이딩, 낚시(터), 바둑(기원)<br>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, 스크린체육시설, 신규 체육시설 대관, 신규 체육시설 물품보관 |

※ 모든 업종에서 의류 및 신발류 일절 비허용. 특히, 낚시(터) 및 바둑(기원)에서 식음료 비허용

※ 복수 분야 운영 가맹점일 경우(예: 문화체험+공예품 등) 취급 비중이 높은 분야를 택일하여 신청

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

# 2026년 문화누리카드 비허용업종 및 품목 안내




##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및 업종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식음료 | 품목 **식료품**: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<br>업종 **식당 및 카페**: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/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 (ex. 보드게임카페, 북카페 등) |
| 의류 | 품목 **의류 및 신발류 일체**(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) (ex. 체육복, 등산화, 실내화 등) |
| 생활 | 품목 • **일상용품**: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, 소품, 장식품, 기호품 중 비공예품*(공산품)<br>*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·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 (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, 단순OEM)<br>• **생활소모품**: 치약, 칫솔, 샴푸, 린스, 비누, 휴지, 세탁주방세제, 수세미, 고무장갑, 향수, 방향제, 향초, 화장품 등(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)<br>※ 생활소모품은 수작업 50% 이상의 공예품이더라도 비허용품목으로 봄<br>• **침구류**: 이불, 쿠션 등 • **전자제품**: 전자제품 일체 • **의료보조기구**: 안마기, 지압슬리퍼, 온열기, 찜질기 등<br>업종 • **잡화점**: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(ex. 수퍼마켓, 다이* 등)<br>• **이미용업**: 목욕탕, 찜질방, 이미용실, 네일, 타투 등<br>• **이벤트대행업**: 일반 행사, 축제 등 기획 및 진행,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|
| 교육 | 품목 **교구**: 교구, 과학기구 등<br>업종 **학원·교습소 등 교육기관**: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|
| 담배 |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|
| 유가증권 | 문화상품권, 도서상품권,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(쿠폰) |
| 숙박 (미성년자 이용제한) | 미성년자(2008.1.1. 이후 출생자) 명의 문화누리카드로 숙박 가맹점(호텔, 숙소 예약플랫폼 등) 이용 불가<br>* 미성년자 명의 문화누리카드를 세대별 합산 대표 카드로 선택하는 경우 주의 필요 |
| 국외 거래 업종 및 품목 전체 | 품목 • **국제선 교통권**: 국제선 항공 및 선박 • **해외여행 패키지**: 해외여행 현지투어 상품 등<br>• **해외 관광지·테마파크 입장권**: 디즈*랜드, 유니버* 스튜디오 입장권 등<br>업종 • **해외 숙박업**: 해외 호텔, 리조트, 게스트 하우스 등<br>• **해외 여행업**: 해외 패키지·현지투어 기획 및 판매 업체 |

* 공예품: 의복(한복제외), 단순 침구류, 음식, 식재료, 건축물 등을 제외한 의식주와 관련된 작은 단위 물품, 소품, 장식품, 기호품 중 실용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, 주요 공정과정('작가의 기획/개발(창의성)' 및 '마감' 공정)에 수작업이 50% 이상 포함된 경우 (참고: 2022년공예산업실태조사)

※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·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(구입)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

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

# 2026년 문화누리카드 비허용업종 및 품목 안내




##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
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식음료 | 다음의 경우 주목적이 문화·관광·체육활동이며, 식음료 체험 및 취식이 부수적인 활동일 경우 예외적 허용<br>① 문화·관광·체육 분야 시설 내에서 취식하는 식음료(예: 영화관 내 매점, 전시관, 테마파크, 리조트 내 식음료점, 지역축제 가맹점 등)<br>②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<br>③ 식음료를 활용한 제조과정이 포함된 현장 문화체험(예: 체험농장, 체험마을 등)<br>※ 식음료 키트 및 완제품은 전화·온·오프라인 결제 불가 |
| 의류 | 다음의 경우 **문화·관광·체육 활동의 활성화 목적**으로 허용<br>• 한복 및 생활한복은 한복 문화 활성화 목적, 천연염색 의류는 천연염색 전통 문화 활성화 목적으로 허용<br>• 수영복은 체육 활동 목적이 명확한 경우로 허용 |
| 생활 | 다음의 경우 **문화·관광·체육활동의 부수적인 경험의 일환**으로 허용<br>• **기념품**: 관광지, 테마파크 등 입장료를 지불하고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기념품<br>• **응원용품**: 프로스포츠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응원용품<br>• **공예품**: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*<br>• **아트상품**: 미술관,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아트숍에서 판매하는 아트상품<br>• **캠핑용품**: 의류·식료품을 제외한 캠핑용품의 경우 취미활동 지원 목적으로 허용<br>• **온천**: 온천(온천법 허가업소)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허용<br>• **사진기**: 일회용 카메라, 필름 등은 취미활동 지원 목적으로 허용<br>• **문화체험**: 생활용품을 활용한 제조과정이 포함된 문화체험 활동의 경우 문화체험 지원 목적으로 허용 (완제품은 판매 불가) |
| 교육 | **학원·교습소**: 하기의 교육기관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목적으로 허용<br>• 미술, 음악, 무용, 사진, 서예 등 기초예술 분야 취미를 위한 학원·교습소 등<br>• 문화체험 강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및 시설은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허용 품목을 활용한 체험 강좌 허용(예: 지역문화센터, 온라인취미클래스 사이트, 음악·미술학원, 태권도장 등) |
| 유가증권 | 허용 분야 내의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와 1:1로 교환되는 상품권<br>(예: 영화관람권, 온천이용권,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)은 허용 |

※ 예외적 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(구입)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